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한 국 광 해 광 업 공 단 법 시 행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제정됨(법률 제17919호, 2021.3.9. 공포, 2021.9.10 시행)에 따라, 등기사항, 융자금 관리, 사채발행, 해외자산계정운용, 해외자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Ⅰ 각종 등기사항안(안 제2조~제8조)

- (설립등기) 목적, 명칭, 주 사무소 소재지, 자본금, 임원현황 등 규정
- (설치등기) 지사, 출장소, 사무소의 신규 설치시 등기방법 규정
- (이전등기) 주 사무소, 지사 이전시 등기방법 규정
- (변경등기) 설립등기 사항 변경 시 등기방법 규정
- (대리인 선임등기) 공단 사장이 대리인 선임할 때 필요사항(대리인 성명·주소, 대리인 주사무소 명칭, 대리인 권한제한 내용 등) 등기방법 규정
- (등기 첨부서류) 안 제2~6조의 등기시 첨부서류 규정
- (등기 기간 기산) 산업부장관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기산

② 자금 융자 및 관리(안 제9조~제10조)

- (재원·담보·금리) 융자대상(광업·석재·골재·광산물가공·광산물비축·채무보증) 및 담보(광업권·광업시설)설정 및 평가, 융자금리(산업부·기재부 협의)
- (융자금 관리) 융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회수가능성이 낮을 경우 대상업체의 경영상태 및 재산조사 실시 및 채무상환 요구

③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부담(안 제11조)

- (사업 경비 부담)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경비, 관리비 등 수익자 부담비용 및 산정기준 공고, 감면제도 규정

④ 사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안 제12조~제23조)

- (사채발행) 발행목적, 발행방법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채 발행
- (사채형식) 무기명식 원칙, 청구시 기명식
- (사채발행방법) 모집 또는 총액인수
- (모집발행) 사채청약서*에 인수사채 수, 인수가액, 응모자 주소를 기명 날인하여 공단에 제출

* 공단명칭, 발행총액, 종류별 액면금액, 이율, 상환방법, 발행가액 등

- (발행총액) 실제 응모된 총액이 사채발행총액에 미달해도 사채를 발행한다고 사채청약서에 표시
- (총액인수 방법) 계약에 따라 총액인수할 경우 모집발행방식 미적용
- (매출발행) 매출발행시 공단명칭, 발행총액, 종류별 금액, 이율, 상환방법, 발행가액 등을 미리 공고, 사채청약서 미작성
- (인수가액 납입) 응모자는 사채모집이 끝나면 인수한 사채전액 납

부, 채권은 발행총액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어야 발행가능

- (채권 기재사항) 채권번호, 발행 연월일, 공단명칭, 발행총액, 종류별 액면금액, 이율, 상환방법 등 기재 또는 전자등록부 등록
- (사채 원부) 공단은 사채원부를 주된 사무소에 보유, 기명식일 경우 소유자 성명·주소·취득 연월일 추가기재, 소유자 열람요구
- (이권흡결) 흡결이 있는 이권을 가진 무기명식 사채 상환할 때 이권 상당액을 제외하고 상환, 이권소유자는 나머지 금액 청구가능
- (통지방법) 채권발행전은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 무기명식 채권은 공고, 기명식 채권은 사채원부에 적힌 주소로 통지

⑤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처리(안 제24조)

- (자본전입) 이사회 의결 및 기재부장관 승인을 거쳐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

⑥ 그밖의 해외자산계정 용도(안 제25조)

- (기타 해외계정용도) ①국세 등 해외자산계정 사업에 부과된 조세, ②해외자산관리위원회 운영 및 관리, ③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⑦ 광산물 비축 관련 관세청 통계자료 협조요청(안 제26조)

- (자료 요청) 효율적 광산물 비축사업을 위해 목적, 내용과 범위, 제공 방법 등을 정하여 관세청장에게 광산물의 수출입 통계자료 요청

⑧~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전문성 요건(안 제27조)

- (자격 요건) ①3급이상 공무원, ②해외자원개발·금융·법률·회계

관련 기관 등에서 15년 이상, ③변호사(외국변호사 포함), 공인회계사로 10년 이상, ④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관련 박사취득 후 대학,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Ⅹ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사무국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 (사무국) 사무국장 1명, 사무국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 요청 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5. 3. ~ 6. 14.)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① 공단이 지사, 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

항

3. 이미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새로 지사를 설치한 경우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이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이전 전의 소재지의 경우: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뜻
 2. 이전 후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
-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만을 등기한다.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각각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2주일 이내
2. 지사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단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지사의 설치등기: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 등기: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7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등기 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 기간

을 기산(起算)한다.

제9조(자금의 융자) ① 법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융자는 광업자금, 석재 및 골재산업자금, 광산물가공자금 및 광산물비축자금의 융자(어음할인 및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광업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鑛業權)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광업권과 광업시설이 아닌 다른 재산을 담보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거나 광산개발이 긴급한 경우
2. 광산의 재개발을 위한 배수(排水) 또는 갱도복구(坑道復舊)를 하려는 경우
3.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과 광업시설에 대하여 제3자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평가액 이상의 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
5. 조광권자(租鑛權者)에게 융자하려는 경우
6.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의 개발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광산개발에 필요한 광업시설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거나 광업권자의 재무상태 및 경영상태 등 신용상태가 공단의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광업권과 광업시설에 대한 담보만으로는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공단은 제2항 본문에 따라 광업권을 담보로 할 때에는 지질(地質) · 광상(鑛床) 조사를 통하여 매장량과 등급 등을 결정하고 그 광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2항 단서의 경우에도 제3항의 방법에 준하여 용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공단이 용자하는 자금의 금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이율(利率)로 한다.

제10조(용자금의 관리) ① 공단은 제9조의 용자금이 용자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용자된 자금이 용자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그 사업체의 경영부실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 또는 담보물의 멸실(滅失) · 훼손 · 처분 등으로 용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채무자의 사업체에 직원을 파견하여 그 사업체의 경영상태와 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의 조사 결과 용자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용자금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채무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그 채무자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사업 경비의 부담) ① 공단이 법 제9조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사업 경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재료비
 2. 인건비
 3. 전기료, 수도료 등 경비
 4. 일반관리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공단의 사장이 관계 기관이나 수익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 ② 공단의 사장은 법 제8조제1항 사업별로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의 사장은 광업의 육성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산정기준이나 제3항에 따른 감면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채의 발행) 공단이 법 제11조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社債)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방법
3. 제1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제13조(사채의 형식) 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사채의 발행방법) 공단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한다.

제15조(사채의 모집발행)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 인수가액 및 청약인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채청약서 2통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공단의 사장이 이를 작성한다.

1. 공단의 명칭
2. 사채의 발행총액
3. 사채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사채의 이율
5. 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간과 이자 지급의 방법
6.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이미 발행한 사채 중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의 총액
8.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제16조(사채의 발행총액) 공단은 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

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17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같다.

제18조(사채의 매출발행) ① 공단이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매출 기간과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출 기간에 매출된 사채총액이 사채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매출총액을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19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사채 모집이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과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20조(채권의 기재사항) ①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사장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전자등록에 대하여는 상법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사채 원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채 원부(原簿)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 두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

3. 제15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 공단은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이권함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償還)할 때 이권이 함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

을 상환액에서 뺀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같은 항에 따라 상환액에서 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소지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공단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 등 해외자산계정 사업에 부과되는 조세의 납부
2.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 해외자산계정 사업을 위하여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자금

제26조(통계자료의 요청) ① 공단은 법 제8조제1항제12호의 광산물 비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목적, 자료의 내용과 범위, 제공방법 등을 정하여 관세청장에게 광산물 수출입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제27조(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위원)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중 법 부칙 제10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해외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외국변호사 포함)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에 관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제28조(해외자산관리위원회 사무국) ① 법 부칙 제10조제7항에 따른 사

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국장은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 기관,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7조와 제28조는 해외자산 전체가 매각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제15조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제33조의4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
- ③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는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제14조제1항제2호는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 ④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해요인이 제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국광해광업공단

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작성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와 제36조는 삭제한다.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로 한다.

⑦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0호는 삭제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⑧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⑨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

업공단”으로 한다.

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⑪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⑫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⑬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사업비의 보조

⑭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광해광업공단

⑮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⑯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조 제2항 중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이사장”을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장”으로 한다.

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19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한국광해광업공단법」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36호 중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②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44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8호 중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③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광해광업공단

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한국광해광업공단

㉖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㉗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9조제5항제2호 및 제17조제2항제2호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㉔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5265